

---

# 입 법 정 보

---

2016-1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6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6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6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6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7
6.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8
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9
8.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법무부) .....	9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10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11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1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15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15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16
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	17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17
1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18
18.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19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20
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1
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3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4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	26
2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부) ..	27

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28
26.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28
27.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30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31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1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2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33
3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33
3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34
3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문화체육부) .....	35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36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36
37.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37
3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38
39.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39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39
4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40
4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0
43.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1
4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2
4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2
4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3
47.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4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45
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46
50.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46

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7
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7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8
5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8
55.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49
56.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50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금융위원회) .....	51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	52
59.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금융위원회) .....	54
6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57
6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58
6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58
63.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기획재정부) .....	58
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59
6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1
6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2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4
6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5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6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68
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69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71
7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73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73
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75

7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환경부) .....	76
7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환경부) .....	78
78. 「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80
79.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81
8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2
8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2
8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82
8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83

##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6. 24.
- 가. 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의2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  
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 나. 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 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6. 24.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족의 범  
위를 일부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범위 축소(안 제33조제2호)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직계 혈족의 형  
제·자매를 삭제하여 활동지원 급여 수행 제한 범위 축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6. 24.
- 가.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  
어 있으나,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나. 등록증 양식(별지 제2호)을 신규 및 변경 등록시 분리하여 등록증  
을 발급함으로서 단체의 이력 관리가 반영되도록 개선

##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채 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10)
  - 1) 부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사업상 불가피한 차입금 등은 제외함.
  -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해양심층수산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하며 해양심층수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설립·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호)
  - 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제6호 신설)
  - 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 라.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처리수 수질기준, 수질검사,

허가 및 준용규정 등 개정(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36조의2에서 제36조의4 신설)

마. 해양심층수 인증(안 제37조의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출입·검사 및 수거 등, 과징금, 폐쇄조치, 수질감시원, 광고의 제한, 청문 개정(안 제38조, 안 제45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조항 신설에 따른 벌칙, 과태료 조항 개정(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8조)

## 6.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기능이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집행적 성격이 강해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해당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개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 및 비밀 엄수의무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안 제3조제1항, 제3항)

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지명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각각 변경

나. 위원회의 처리 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신설)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행한 피해자 조사 등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

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위원회 위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 자격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안 제4조 삭제)



위원회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실무위원회 폐지

마. 위원의 그 직무에 관한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안 제12조 신설)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

바. 민간위원 별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3조 신설)

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별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 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

사. 별칙 규정(안 제14조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1항)

직무관련 비밀을 누설한 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조제2항)

## 7.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과 관련하여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14.2월)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축소하고자 함
-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지정 비율 축소(제4조제1항)
  - 1)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지정 비율을 67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축소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8.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기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결격사유(안 제3조), 자료 수집·기록현황 통보 및 이관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5조, 제6조), 자료의 보존·관리기간(안 제7조)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규정
-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현황통보 및 이관관련 서식을 규정
  - 문서, 영상녹화자료, 물건 등 자료별 수집 기록 목록 및 이관 목록 서식 등 7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고의적인 산재은폐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발주자가 여러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한 경우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도급인이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금지 및 벌칙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산업재해의 단순 미보고와 다르므로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의 근거가 없는 4개 분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 근거 마련

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6. 06. 17.      • 마감일자 : 2016. 6. 27.
-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 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나.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 의2제5호 및 6호 신설)

다.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17.                      • 마감일자 : 2016. 7. 27.

○ 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대상 기관들의 조사·평가의 관심도 및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해촉 사유를 도입하여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제고

다. 법 제81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의 내용·방법, 결과제출 및 점검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 발생의 사전예방에 기여

라. 법 제82조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관련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고 취업제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 가.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 공표일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등에 대한 잠정적인 중지조치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됨(안 제74조의2 신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74조의3 신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4) 제76조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마. 공공기관의 장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실시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제출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88조의2 신설)

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바목에서 위임한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 1) 비위면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법인, 단체

2) 비위면직자 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단체

3) 위 기관, 법인, 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기관, 법인, 단체

사. 위원회는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0조 제3항 신설)

아. 법 제82조의2에서 위임된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

1) 징계대장 및 징계의결서

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 제한 자료

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제한 자료

4) 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인적사항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2조의2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별표 2의 개별기준 개정)

차. 그 밖에 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용어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89조 제1항, 제3항, 제90조 제1항 개정)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8. 1.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07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선정 및 면제절차를 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조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 법인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제외대상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제출서류 등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8. 1.
- 자동차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경매 시에도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도록 명확히 규정(법률 제13933호, 2016.1.28, 일부개정)하였으나, O2O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한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경매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14호)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다는 괄호의 내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을 삭제함.

나.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의 근거 마련(안 제63조의2제1항)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내차팔기 서비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매매정보제공)에 대한 관리 감독(안 제63조의2제2항 제3항, 제66조제2항, 제72조, 제81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력관리정보 등의 표시, 거래기록 보관, 개선명령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의 취소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등록관청에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 관련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7. 30.

○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 향상 등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및 안전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로주행시험의 실격기준을 강화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통(연습)면허소지자의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찰청 공고 제20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 3. 14 ~ 4. 25)안에 대해, 운전면허시험장 개선 시 일부 불필요한 제약을 완화하고 개정령안의 표현·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음



- 가.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 하였으며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함(안 별표 23, 별표 24).
- 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를 삭제함(안 별표 25).
- 다.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상향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실격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26, 별지 제50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 라.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함(안 별표 32).

## 15.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8. 1.
- 가. 감사인 자유선임(통상 4월말)후, 지정감사(통상 6월초)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안 제10조제8항)
- 나. 지정감사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회사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 (안 제10조제7항 및 제13조제3항)
- 다. 전기(前期) 자유수임 감사인이 당해 회사 감사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 1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8. 1.
-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16. 5. 9.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 선임시,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안 제3조제7항)
- 나.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지정사유 중 회계적 위험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9항)

## 1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8. 1.

-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개 절차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함)을 실시하도록 강화하여 교육활동 현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사고 등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공개
  - 1)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내용 공개방법 등 마련
  - 2)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등 비품 구입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적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제시
- 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정보 공유, 보고 및 공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1)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 서면 등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유한 정보를 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환자(의심환자)에 대

한 보고를 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록관리 방법의 변경(안 제10조제2항)

1)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감(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마다 교직원의 교육훈련 기록 관리방식이 상이하여 응급처치교육 이수 결과의 기록 관리에 어려움 발생

2)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실적의 기록 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하고, 기록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며(별지 제4호 서식 신설), 당해 연도 교육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의 강화(별표 제9호)

1)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내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인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 보유)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

## 18.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7. 15.

○ 감염병 정보를 공유·공개함과 아울러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법률 제14055호, 2016.3.2 공포, 2016.9.3 시행)으로 「학교보건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1)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감염병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

는 확산 시 감염병환자의 이름, 소속기관, 확진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도록 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1) 교육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을 배포할 경우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을 감염병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배포된 매뉴얼에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임

라. 감염병정보의 공유 또는 감염병 학생 및 교직원의 보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6. 20.                      • 마감일자 : 2016. 7. 1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제5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이에 법원에서 취업제한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 선고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적용 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가.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의 실효 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에 따라 차등 선고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을 때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6조제1항, 제2항)

1) 형의 실효기간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선고는 3년 초과 징역·금

고 선고자 10년 이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이내, 벌금형 선고자는 2년 이내

나. 법원은 재범위험성의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56조제3항)

다.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성범죄로 판결을 받은 자, 취업제한기간을 형의 실효기간(10년)내에서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조제3항)

1) 선고형량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3년 초과외 징역·금고 선고자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자 5년, 벌금형 선고자는 2년

## 2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동 측정기기의 부착·운영에 관한 규정,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후관리 및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실내라돈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규정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변경(안 제5조, 별표 3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권고기준 중에 석면, 오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PM-2.5), 곰팡이로 변경

다. 건축자재의 사후관리방법 및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

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법을 마련

2)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에 표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라. 실내라돈의 권고기준,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및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9 신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200 \text{ Bq/m}^3$  이하로 설정

2)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위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3) 실내라돈지도는 행정구역별로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시설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조정 및 측정결과 보고의 간소화 등(안 제11조)

1)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에는 지하역사 등 시설(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8호, 제13호부터 제24호),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영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로 구분 조정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가측정 결과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자가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보고체계를 간소화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방법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3 신설)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및 지정서 발급 절차, 센터의 사업계획 심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별표 9)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업무를 실시하거나,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실내환경관리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2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을 추가,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실내 공기질 측정의 면제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 추가
-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기준(안 제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한 시설의 소유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면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확인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
  -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 라.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안 제8조 신설)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마.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안 제9조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과 지자체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면제. 단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한하여는 한시적으로 적용(~2018년 12월 23일)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10조, 제11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심사단 구성 심사를 실시하여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

2)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조치

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화(안 별표1)

1)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공급한 자에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신설

2) 시험기관이 자료 등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이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을 추가,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실내 공기질 측정의 면제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 추가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기준(안 제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한 시설의 소유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면제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확인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라.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안 제8조 신설)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별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마.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안 제9조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과 지자체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면제. 단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한하여는 한시적으로 적용(~2018년 12월 23일)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10조, 제 11조 신설)

- 1) 환경부장관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심사단 구성 심사를 실시하여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
  - 2)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조치
- 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화(안 별표1)
- 1)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2,000만원으로 강화하고,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공급한 자에게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신설
  - 2) 시험기관이 자료 등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이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 **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6. 27.
-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정책실의 업종별 정책 육성·진흥 기능을 산업기반실로, 산업기반실의 지역산업 정책 및 진흥 기능과 산업기술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각각 이관하여 산업정책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2016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에 두는 하

부조직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광산보안사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4명(8급 4명)을 광산보안사무소로, 광산보안사무소 4명(6급 4명)을 광업등록사무소로 각각 배정하고, 광산보안사무소에 공업직렬을 신설하며,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4. 농림축산식품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농림축산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6. 28.
-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식품산업정책실에서 축산정책국으로 이관하고, 농업인단체에 관한 사항을 농촌정책국에서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장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에 이관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에 변경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유통소비정책국 및 농촌정책국 하부조직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며, 정책홍보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부내 인사담당 전문경력관(가군→나군)과 홍보담당 전문경력관(나군→가군)의 직급을 상호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라 9급 3명을 7급 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그동안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하던 8급 30명을 9급 30명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을 일부 정리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인증관리팀과 상향조정한 직급(6급 1명→5급 1명)의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현재 건축물, 공항, 댐·저수지 등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시설별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어 내진설계기준 간에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현행 소관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여 내진설계기준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나. 예방·대비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한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에서 대응·복구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로 한정됨에 따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진 및 화산재해와 관련된 업무 중 예방·대비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26.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 고용의 날 제정 등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 가. 고용의 날 지정(안 제6조의2)

고용은 경제의 근간이자 국정의 핵심목표이고, 국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함

나.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근거 명확화

라. 고용영향평가 확대(안 제13조)

각 부처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요구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소관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대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이행력을 강화함

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신설(안 제13조의5)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사. 권한의 위탁(안 제40조)

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27.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8. 1.
- 기존 규칙에 새로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제 및 복제품에 대한 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규칙 적용 대상 기관 확대(안 제1조, 제2조 2호)
  - 1) '13년 일부개정 이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14년 10월)을 규칙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
- 나. 복제의 정의 보완(안 제2조 1호, 제7조 6호)
  - 1) 복제의 정의에 복원 내용 추가 규정
- 다. 무기류 제조허가 소지여부 확인 조항 신설(안 제3조 ④항·⑤항)
  - 1) 총검 단속법 적용 무기 복제 절차 마련(④항)
  - 2) 총검 단속법 저축 여부 확인을 위한 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조항
- 라. 허가 제한 사항 추가(안 제4조 ①항 1호, 제7조 6호)
  - 1) 타 법령에 의해 제한되거나 범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제한 조항 신설
- 마. 사후 점검 및 관리 규정 반영(안 제9조 5호, 제9조2)
  - 1)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나 복제 완료 시 사전허가, 서면보고 등 규정
  - 2) 복제품 허가사항 준수 여부 사후관리 규정 마련(신규 양식)
- 바. 준수사항 추가(안 제9조 7호·8호)
  - 1) 복제 결과 고지 의무 신설
  - 2) 복제 허가의 범위(외형 복제에 한정), 타 법령과의 관계 시 추가 허가 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
- 사. 서식 보완
  - 1) 유물 복제 허가서
  - 2) 복제유물 관리 점검부

##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6. 6. 21.      • 마감일자 : 2016. 7. 11.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 제14269호(2016. 5.29)로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64조)
-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

## 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2.      • 마감일자 : 2016. 07. 1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44조의2 신설)
- 나.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44조의3 신설)
- 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

-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4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마.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46조 개정)

###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2.      • 마감일자 : 2016. 7. 1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자료 제출의무의 부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초과지원액 환수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함 (안 제21조의2제2항 개정)
- 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설정함 (안 제33조의4제1항 개정)
- 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 (안 제35조의4 신설)
- 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 (안 제35조의5 신설)
- 마.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거나 들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하거나 반환받아야 하는 학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함 (안 제35조의6제 1항 및 제2항 신설)

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 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함 (안 제38조 신설)

###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2
- 보조금통합관리망내 실시간 집행·모니터링 기능 구현을 위해 보조금예탁관리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것임
- 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단위별로 사업목적·대상, 신청절차, 수행상황, 평가결과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할 때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및 속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함.
- 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지방비부담액 포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 **3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5.

-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적정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낙후지역을 포함한 특구의 광범위한 지정을 방지하고, 특구로 지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을 자동 지정해제함으로써 특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구의 지정요건 강화(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기존 특구지정 요건에 ‘인프라’ 항목(연구개발성과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본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을 것)을 추가함
- 나. 특구의 변경절차 도입(안 제4조제5항)  
기 지정된 특구의 변경의 경우에도 초기 특구지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미한 경우 예외 할 수 있도록 함
- 다. 특구의 자동 지정해제 의제화(안 제5조의2 신설)  
특구로 지정고시 후 지정기간 내 특구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않을 경우 해당 특구 지역을 자동 지정해제
- 라. 입주승인 취소 관련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 명확화(안 제40조)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제40조제①항 각 호 외의 내용 중 ‘6개월 이내의 시정을 명하고’ 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로 수정하여 법령해석상 의미를 분명화함

### 3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7. 13.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와 수당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기준 및 실무경력 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3억 이상을 정함 (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절차를 정함 (안 제6조)

### 3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7. 13.

○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확정·변경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주기, 절차 등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으로 용역 발주금액 또는 용역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문인력 1인을 보유하고,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전문인력 2인을, 1억원 이상은 전문인력 3인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5조)

라. 국가기관등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수행전문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우수공공디자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가.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안 별지 제1호의2)
- 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서를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개선(안 별지 제9호 서식)

### 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이 타 법령의 유사기준과 비교 시 제재수준이 미약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동 법률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영화업 신고 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일괄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재해대처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상향(안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현행 100만원~200만원에서 2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 37.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2.

○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과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을 조정하고, 교육훈련 효과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을 개선하며, 권익위 권고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공무원 필기시험 제도 변경에 맞추어 프로그래밍언어론 과목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하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제도를 폐지하며, 군무원의 자기개발 취지에 부합하게 승진 가산 자격증의 적용기준을 군무원 임용후 취득한 자격증으로 한정하고, 시행령상 근무성적평정 횟수 조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 조정(안 제28조)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점수 산정기간을 실제 승진소요기간(3년~15년)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산정기간(10년)을 고려 최근 10년 이내 해당 계급의 평균 평정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나. 교육훈련성적 평정방법 개선(안 제25조)

성적을 평가하는 교육훈련이 2개 과정 이상일 경우 평정점 인정 범위를 '각 성적 합산'에서 '각 교육훈련성적을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개선

다. 채용서류 구비시 사진규격 통일(안 제19조)

권익위에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포함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

라. 채용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2)

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의 변경추세를 반영하여 전산직렬의 필기시험 과목중 프로그래밍언어론을 정보보호론으로 변경

마.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 제도 폐지(안 제18조)

기존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등을 채용시험시 가산토록 규정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가산자격

증 제도 폐지 등을 고려 군무원 채용시 가산자격증제도 폐지  
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제23조, 별지 제7호)

근무성적평정 횡수 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조정 등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적시적인 하위법령 개정

### 3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6. 23.      • 마감일자 : 2016. 8. 2.

○ 가. 군무원의 성실복무 유도과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평정횡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경력평정점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대 기여도가 높은 우수 성실근무자가 승진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개정

나. 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을 도입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규정을 군무원인사관리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화하고, 군무원 인사기록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군무원 평정횡수 조정(안 제66조, 제74조)

연중 균형된 업무성과 평가를 위해 4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횡수를 연 1회 4월30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4월30일, 10월31일로 조정

나.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안 제45조)

연공서열 타파, 성과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 조정(60→80%)하고 경력평정 비율은 하향 조정(30→10%)

다. 공채 필기시험 과목(국사)의 대체시험 도입(안 제18조)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라. 필기시험 합격자 규정을 훈령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안 제18조)

현행 군무원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 \* 공무원의 경우 동일 규정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제23조)

마.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산정기준 강화(안 제49조)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위탁교육후 의무복무를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휴직의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학휴직만 제외하던 것을 유학휴직, 타기관 취업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을 추가로 포함하여 제외하도록 함.

바. 군무원인사기록 관리방법 개정(안 제5조)

군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및 현역과 동일하게 전산으로 작성·유지·보관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 39.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6. 24.                      • 마감일자 : 2016. 7. 11.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안 제8조)

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명시(안 별지 서식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6. 24.                      • 마감일자 : 2016. 7. 11.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 을 명시 (안 제14조)

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 (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각각 삭제 또는 정비

다. 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 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로 하여 ‘특별자치시’ 명시 (안 별표)

#### **4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6. 24.                      • 마감일자 : 2016. 8. 3.

○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케이블 설치기준과 철거절차를 강화하고, 현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회선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통신실 설치면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공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 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 24조)

나. 공중케이블 설치기준명시 및 철거절차강화(안 제18조 및 제24조)

다. 복합건축물의 집중구내통신실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19조)

라. 구내간선케이블 회선 수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 및 제20조)

#### **4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4.                      • 마감일자 : 2016. 7. 6.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0092호, 2010. 3. 17. 공포, 2010. 6. 18.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394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으로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포함해야 할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2)
- 다.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43.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8.
- 위험물의 세부분류, 위험물 철도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송화물에 대해 위험물 여부 확인(안 제2조의2 신설)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경우 철도운영자는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화물이 위험물인 경우 동 규칙을 적용하여 포장·적재 운송하도록 규정
- 나. 탁송인의 위험물 운송의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5조제1항)  
탁송인이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위험물 항목, 용량, 취급절차

- 및 비상 시 조치요령 등이 적힌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다. 위험물의 역 구내 적재 보관 금지(안 제16조제2항)  
운송의뢰 위험물이 역구내로 반입되는 경우 지체없이 운송하도록 규정하되, 안전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함
- 라. 위험물 종류별 세부 분류 및 적용 규정 명확화(별표)  
위험물의 세부 분류를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분류체계 적용과 선박운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4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7. 8.
-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증표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 4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8.
-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 4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8.

○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개선 기타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에 대한 정의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설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 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입주자 특성(대학생, 고령자 등)과 공공 리모델링 주택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수준의 주차장설치 특례 적용 근거 마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등 개선

지자체 시행 행복주택은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라.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해당 시·군·구 주민이 우선 입주하고, 남은세대 발생 시 광역 단위 (시·도)의 입주자 모집

마.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강화

#### **47. 수도용 자재의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7. 7.

- 현행 규칙에 따르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 경영체제인증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산품안전법이 2017년 1월 27일 부로 폐지되고 일부 조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타 법령으로 이관되어 시행(2017.1.28)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향후 개정될 타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또한, 「수도법」이 개정(2016. 7. 28. 시행)되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파기·교환 등(이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수거등을 실시할 사업자가 제출할 수거등의 계획서와 수거등의 결과보고서를 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
- 가. 개정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맞도록 위생안전기준 인증시 공장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타 법의 인증에 대한 내용을 수정(현행 제6조제2항제 2호

개정)

나. 변경된 타법의 조문번호를 반영(현행 제7조제2항제2호 개정)

다.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5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3항 신설)

라. 수거등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7호 및 제8호 신설)

## 4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7. 12.

○ 「2006 해사노동협약」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선원 유기 방지 의무 명시(안 제38조의2)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을 송환하지 않고 송환비용 및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원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등 선원의 필수적인 부양없이 선원을 방치하는 선원 유기를 하지 않도록 규정

나. 유기보험 등의 가입 및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지급(안 제40조, 안 제40조의2)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환비용, 송환수당, 체불임금 등 유기구제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기보험 등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유기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안 제40조의 5, 안 제106조의3)

- 보험사업자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보험 등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해지나 종료 시 사전에 선원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함

라. 보험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안 제41조, 안 제106조의4)

-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보험 가입여부, 재해보상금 및 유기비용의 청구·지급절차 등을 선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마. 벌칙(안 제170조, 안 제173조, 안 제178조, 안 제178조의2, 안 제179조)

- 유기보험 등 및 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보험사업자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제정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함

#### **49. 약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26.

-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50.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7. 7.

-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업무’ 중심의 점수 취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 반영하며 자격증 등 가산점관련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규정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항목 중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 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직근 상급자의 평정권을 확대(제7조,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서식 부표1)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포상 등 평가기준 별 항목에 경위서 추가(제2호서식 부표2)

다.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 규정을 종전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 규칙 제5조에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로 변경(별표7)

## 5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7. 7.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조력을 위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 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14164호, ' 16.5.29. 공포, ' 16.11.30.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 마련

- (제6조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제14조의5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 나. 개인과의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마련(제14조의2 제9항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 다.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개선(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 **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6. 27.                      • 마감일자 : 2016. 8. 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의무 및 개인과의 표지 부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등을 신설하고자 함
- 가.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제17조의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의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 으로 정함
-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19조)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 다.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제21조 별표5)

### **5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7. 8.
- 건축 투자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리뉴얼 촉진 등을 위한 「건축법」 개정( '16.1.19, 법률 제13785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려



는 것임

○ 결합건축의 기재(안 제8조의2 신설)

결합건축으로 인한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결합건축 여부,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 등을 건축물대장에 명시하도록 함

## 55.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 ('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의 항공기·자본금 요건(면허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안 제40조, 별표 8)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면허 취소사유(피해 유형 등)를 구체화(안 제48조)

3) 안전의무 위반 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별표4)

4)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 미이행시 면허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별표5)

5) 항공운송사업 면허 자료 제출 및 고지 의무 위반,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보고 위반, 사업 개선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별표7)

## 56.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및 면허체계 개편 등 항공법 ('16.3.2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자격심사 강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 화물 수송 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1)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에 여객(좌석수) 외에 화물운송을 위한 기준(최대이륙중량)을 신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안 제14조의2)
  -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능토록 개선(안 제65조제1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조종자 자격기준 변경(안 제66조의4제2항)
  - 4) 항공종사자 지정전문교육기관에 심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감독활동을 강화하여 ICAO 국제기준 충족(안 제94조 제7항)
  - 5) 산불진화 헬기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불진화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에 대해서도 지식·기량을 검증하는 운항자격심사를 받도록 규정(안 제149조 제1항)
  - 6)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허가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제고(안 제278조)
  - 7)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준수 여부, 중요 경영사항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 제출자료를 명시(안 제278조의3)
  - 8)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면허자

문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안 제278조의4)

9)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식 신설(안 제288조의2, 별지 제120호의2 서식)

1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에 안전문화 항목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을 추가하여 항공사 안전경영 유도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강화(안 제288조의3)

11)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악화로 인한 항공안전·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무구조 개선명령 시점을 구체화(안 제291조의2)

12) 행안전시설 분야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를 위하여 항행안전분야전문가 자격 기준 신설(안 제325조)

13) 항공기를 통해 수송되는 승객·탑재화물 등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시 제출항목 구체화(안 별지 제69호 서식)

14)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의도모(안 별지 제104호 서식)

## 5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법률 제14123호, 2016.3.29. 공포, 2016.9.30.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안 §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 4 및 별표1)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안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

## 5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관련 기초서류 보고·신고제도 및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방법·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경쟁·혁신 촉진을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며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고 공제업(共濟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의 공동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3항)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보험종목)과 같은 보험업을 영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1조의2)  
보험회사가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영·부수업무 영위에 따른 신고 부담을 완화함

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규제 완화(안 제106제1항 등)  
보험회사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비율로서 부동산의 소유 비율,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 비율,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비율 등을 폐지함

로써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제1항·제3항 등)  
보험회사가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승인 등을 받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또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적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안 제127조제2항 등)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사.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안 제128조의4)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 보험약관 등에 대한 이해도 평가로 개편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을 작성하여 사용토록 유도함

아. 보험계약 이전 결의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제2항)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 그 이전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현행 계약 이전의 요지와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도록 한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해 통지토록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함

자. 보험계약이전시 신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42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경영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국내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계약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이후에도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차.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안 제193조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가 공제기관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209① ii 의2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그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59.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관련법에 산재한 「판매규제 - 분쟁조정 -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안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11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

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제4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 규정[안 제2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등의 책무를 정함.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체들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정함으로써 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

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안 제5장제1절 및 제2절(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 영위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토록 규정함.

2)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유관부처 간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조정 및 통합을 통해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금융 교육 관련사항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안 제5장제3절(제35조 및 제36조)]

1) 금융 교육 관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금융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2) 금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사.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5장제4절(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



임을 일부 부담토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대출 등 계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의 해지권 도입(안 제50조 및 제51조)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등으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

2)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계약 내용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장제2절(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6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7. 28.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피해 당시의 기준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기준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 할 수 있도록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 61.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 를 추가함으로써 기금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3조의4)

## 6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8. 8.
-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권 매각대상기관에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 를 추가함으로써 기금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자 함
-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추가(제27조의2제3호)

## 63.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6. 28.                      • 마감일자 : 2016. 7. 5.
- 2017년에 개최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 및 2018년에 개최되는 아프리카개발은

행(Af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다자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둬.

2)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3) 기획단은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안 제4조 및 제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80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제80조제5항 삭제, 안 제80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

특수임무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82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6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67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

보장정보시스템 연계(현행 제67조제5항 삭제, 안 제6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69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애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0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66. 고엽제후유의증 등 원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인)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 및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7조의9제4항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고엽제 역학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제1항)

- 1) 고엽제 역학조사의 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됨
- 2) 고엽제 역학조사 대상을 월남전 참전군인 등으로 명확히 하여 원활하게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제28조제5항 삭제, 안 제31조)

- 1)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6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39조제4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1)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0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1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 적용 배제 조항 정비(안 제39조제1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된 조항을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조항으로 대체



## 6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이자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47조의2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현행 제15조제2항·제72조제5항 삭제, 안 제70조)

1)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5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72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 6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재판정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보상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판정신체검사에서 기존 등급보다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특례 규정 신설(안 제8조 신설)

1)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처의 호전으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보상금이 크게 낮아져 생계 불안정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4개 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국가유공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생활안정을 도모

나. 채용 또는 고용 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안 제37조의3 신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5급 이상 상이자를 채용 또는 고용할 경우 실인원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그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촉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14조의3제2항·제79조제5항 삭제, 안 제82조의6 및 제77조)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및 제83조 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79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1) 무의탁수당 폐지, 가족수당 신설, 간호수당 지급대상 축소 등 보상체계개편으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하락하는 사례 발생

2)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무변동인 경우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되, 종전법의 보훈급여금이 더 많을 경우 종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상이등급 무변동자 중 이 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하락한 자는 종전법을 적용하여 더 많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70. 독립유공자에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등 사무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적용 배제 사유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으로 제외되었던 조문을 다시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기존에 법적용 배제 사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2016. 1. 6. 공포·시행)되면서 이들 조문이 삭제되었고 같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법적용 배제 사유인 조문을 삭제하였으나, 법 개정 전에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 39조제5항 삭제, 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신설)

- 1)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록, 신상변동 등 사무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가족 관련 정보, 병무·교정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자료제공요청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2항, 안 제41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보호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제3항, 안 제43조제3항 신설)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인정 갱신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간을 조정하며, 시설급여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촉탁의 활동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12.29. 개정)에 따라 부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

공단이 이용지원 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 갱신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단기보호 급여 월 한도 사용일수 변경(안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가 재가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 사용일을 조정(월 15일 이내 → 월 9일 이내)하되, 필요시 사용일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연간 2회 → 연간 4회)

다. 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및 24조)

시행규칙 서식19호 및 서식21호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됨에 따라 그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키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설치신고 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1에서 복지용구 제공기관의 세정 소득 등 공간의 최소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의 면적 현황을 첨부하도록 함

마.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제공기관 인력기준 중 필요한 인력 규정 삭제(별표1)

의무적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필요수 인력이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에서 폐지됨에 따라 기타 재가급여 인력기준에서도 삭제

바. 급여비용 부담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제공 제한처분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29조 및 안 제29조의2, 별표2)

법 제37조의5 개정(법률 제13647, 2016.12.30. 시행)에 따라 부담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급여제공 제한처분 시 기준 및 공단에 대한 통보방법 마련

- 사.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반영(안 제30조 및 안 제31조)  
 시설급여 중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의료기관  
 이 직접 청구·지급하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함
- 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안 제36조의2)  
 법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  
 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  
 센터 설치 시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자.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서 서식 마련(안 제40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 서식 심사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  
 나 관련 서식이 미비함에 따라, 법정 서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청편  
 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정비(안 서식1호의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대리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대리인, 보호자가 수령인인 경우 수령지 주소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카. 의사소견서 정비(안 서식2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으로 노인성 질병 중 ‘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의사소견서에 반영함

##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7. 19.
- 장기요양 등급의 반복적인 갱신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  
 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심사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1차에 한정하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에 따라 복지용구 범  
 위를 확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 가담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  
 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4215호, 2017.5.30.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안 제8조)

장기요양인정의 반복적 갱신으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나. 복지용구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복지용구의 범위에 인지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가 포함됨에 따라 조문 정비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규정(안 제18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라.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25조)

심판청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마. 급여제공 제한처분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장이 그 대상자 명단을 행정처분대장에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바. 노인성 질병의 종류 정비(안 별표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에 따라 노인성 질병 중 ‘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를 정비

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거짓 작성 및 급여비용 부정청구 가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별표3)

법 개정(법률 제13647호, 2016.12.30.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7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8. 8.
- 혈액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제48조제5호 및 제9호, 별표 3의4 신설)
  - 1) 현행 혈액제제는 여타 생물약품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GMP 기준이 없어 여타 다른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 혈액제제의 특성(소량제조, 단순공정 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3)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을 통해 우수한 품질이 확보된 혈액제제의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69조제1항)
  - 1)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2) 의약품의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8. 8.
-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

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신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만혼 등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바, 난임 치료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력단절을 예방할 필요.

아울러, 장시간 근로개선 및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택에서 근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원격근무 할 경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근로자의 보호의무 및 의견청취의무,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시간 중 금융상품 판매 등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영리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 가. 모성보호 제도 개선

- 1) 육아는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도록 함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라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도록 함
- 3) 만혼 등 난임부부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난임휴가를 도입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도록 함
- 4) 유산 조산 위험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함

#### 나. 일 가정 양립 제도 개선

- 1) 장시간 근로개선,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무자격 업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6. 29.      • 마감일자 : 2016. 8. 8.

- 1995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신설되어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 하게 되었음.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도입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와 같이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벌금 집행의 지연이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 사례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정식재판 청구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상한 보증’ 제도로 전락하였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의 결정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는 정식재판 판결보다 우선하게 됨에 따라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등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6배 이상 급증('97년 1.8%, '05년 6.9%, '14년 11.5%)함에 따라 사법역량이 오히려 경미사건에 집중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는 경미사건 중심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사법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피고인을 신속하게 사법절차에서 해방시킨다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일련의 같은 1심 절차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사소송구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제도임.

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정의와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안 제457조의2 삭제).

## 7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9.

-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사전협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 ~ 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기관과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 후 최대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협의 결과를 인정토록 함.

- 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절차·방법(안 제9조)

허가·변경허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사전에 신청토록 하고,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은 90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하며, 허가 등의 신청시 배출영향분석 결과 및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운

영 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다.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안 제10조)

통합허가 또는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에서 추가되는 오염도 및 총 오염도를 산정·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

라.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절차(안 제14조~제16조)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안을 제출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토록 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설정함.

마.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판정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정기검사 등에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사업장의 관리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재수검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

바. 허가조건 등의 검토·변경절차 및 방법(안 제18조~제1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이후 5~8년마다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변화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34조)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조사토록 주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

아. 최대배출기준의 설정(안 제37조)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로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함.

자. 기술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8조)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차. 출입·검사의 주기 및 방법 등(안 제42조~제43조)

출입·검사를 검사의 목적과 실시하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별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카.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등(안 제46조~제47조)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항목별 자가측정 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반영하여 준수토록 함.

타. 연간 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시기(안 제49조)

매년 4월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함

## 7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9.

○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통합관리의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구체화(안 제2조)

화력·기타발전업, 폐기물처리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적용토록 함.

나. 사업장 단위 변경허가·변경신고(안 제3조~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및 사용 연료·원료의 변경 등으로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장 내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장 단위의 중요 변경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교체·폐쇄·변경이나 사용 원료·연료의 변경 등은 변경신고토록 함.

다. 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변경(안 제7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 여건의 변화 및 사업장 환경관리 여건의 악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특성 및 모니터링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의 연장기준 구체화(안 제8조)

환경관리기법의 적정성, 법령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토록 함.

마. 배출부과금 산정·감면·납부방법 등(안 제14조~제22조)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배출량에 비례하여 초과 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산정된 배출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재이용율 등에 따라 감면토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및 작성방법(안 제31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를 5년으로 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기준서의 작성 등을 위한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최적가용기법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보 공개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35조)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

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 구체화(안 제36조)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신청·검토·통지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를 구체화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통합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요건 등(안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통합허가 및 주요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신청내용 및 통합환경 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토록 함.

## 78.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11.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운항관리업무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절차 개선(안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나. 사업계획 변경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다.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기 구체화(안 제15조의2)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

라. 운항관리자의 권한 명확화(안 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 및 필요한 사항의 확인 등으로 명확화

마.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규제 완화

## 7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11.
- 여객운송사업자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제도 마련, 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보완 및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 결격사유 보완 (안 제8조)  
결격사유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법률 추가
- 나. 여객선고객만족평가위원회 폐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우수 또는 부진한 선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 동 사안에 대해 수시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함.
- 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제도 마련 (안 제21조의5, 안 제59조)  
내항여객선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이수 의무를 위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라. 공모·가담자 제재 규정의 마련(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석유판매업자 등이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 또는 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마. 해운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중복 규제 삭제(안 제50조)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규정이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 바. 보험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57조)  
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8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9.
- 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폐업 신고 등을 내용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8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8. 9.
- 기부물품을 식품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9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8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7. 7.
-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시조직으로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적정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립부산물검역소의 검역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천지소를 폐지하고 신항지소를 신설하며 개방형 직위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8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6. 6. 30.                      • 마감일자 : 2016. 7. 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 구성하고자 함

#### 나.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그간 시행령으로 위원회의 회피(제20조)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